



Oct.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산업동향

- 불법 하도급 유형과 해법
 - 하도급과 불법 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맞춤형 해법 찾아야

정책동향

-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4.08.30)」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연평균 약 40만 호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 예정

시장동향

- 기준금리 인하가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점검
 - 금리인하는 일정 시차를 두고 건설경기에 긍정적 영향

산업동향

불법 하도급 유형과 해법

- 하도급과 불법 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맞춤형 해법 찾아야

홍성진 연구위원
(hongsj@ricon.re.kr)

1. 불법 하도급의 발생 유형

- ◆ 건설공사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하도급은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 용역, 물품 등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생산방식
- ◆ 불법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하도급의 범위를 벗어난 하도급을 의미하며, 적정 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품질 저하, 시설물 및 공공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공정건설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발주자는 불법·불공정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신고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하도급 수시·상시 단속의 형식으로 시행
 - 건설공사 정보를 교차 분석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지표 10개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단속현장을 추출하고 단속기관에 통보 및 조사



* 자료 : 건설산업정보원

〈불법 하도급 단속 관련 의심지표 10개〉

구분	추출지표	추출기준	분석자료
의심지표 (10개)	① 노무비지급률 미달	• 노무비지급률 하위 5% 현장 - 노무비 지급률: 노무비지급액/(진행률×계약금액)	•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정보
	② 공제부금 납부율 미달	• 공제부금 납부율 50% 미만 현장 - 공제부금 납부율: 공제부금납부액/(진행률×공제부금 반영금액)	• 전자카드 현장 정보
	③ 전자카드 사용률 미달	• 전자카드 사용률 70% 미만 현장 - 전자카드 사용률: 전자카드발급인원 사용일수/신고일수	• 전자카드 현장 정보
	④ 전자카드 미계약 업체	• 건설공사대장 통보 하도급업체 중 전자카드현장 소속 계약업체로 미확인된 업체가 있는 현장	• 건설공사대장 • 전자카드 현장 정보
	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 전자카드현장 소속 업체중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약이 미통보된 업체가 있는 현장	
	⑥ 사업장이행등급 저조	• 근로자공제회 관리 사업장이행등급이 4~5등급(미흡, 부진)인 현장 - 사업장 이행등급: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행률, 미신고 건수, 미납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산출(1~5등급)	• 전자카드 현장 정보
	⑦ 하도급 업체 수 미달	• 종합공사 금액 구간별 평균 하도급 업체 수의 50%에 미달 - ex: 50~100억원 평균 하도급업체 수 3.3	• 건설공사대장
	⑧ 종합업종간 하도급	•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종합업종)가 종합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재하도급사를 통보하지 않은 현장	• 건설공사대장
	⑨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신규 수주 현장	•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대상 업체가 도급/하도급한 현장	• 건설공사대장
	⑩ 비계, 가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 건축 공종 현장 중 비계, 가시설 직종의 근로자를 미 배치하고 관련 하도급 계약도 없는 현장	• 건설공사대장 • 전자카드 현장 정보

◆ **건설산업에서 하도급 허용 범위를 넘어선 불법 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유형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와 실무의 괴리로 발생하는 경우
- 유형 2: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도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
- 유형 3: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이후 수수료만 편취하고 불법 하도급하여 발생하는 경우

2. 불법 하도급 개선을 위한 해법

(1) 유형 1

① 현황

-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건설공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불법 하도급’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양산하고 있음**

② 원인(예시)

- ◆ **(시공참여자의 폐지) 시공참여자제도가 2007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숙련된 팀 단위로 존재하고 있고 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과 공사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여부의 해석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시공참여자는 1999. 4. 15.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실명제를 위하여 종래 관행화된 ‘십장’을 ‘시공참여자’의 명칭으로 법률에서 명문화한 후 2007. 5. 17. 다단계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폐지
 - 시공참여자 폐지 목적과 관련하여 처우 개선의 경우 숙련도·높은 보수·정년 등의 문제로 특정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지 여부, 건설사업자 전환의 경우 등록 기준 및 수주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
 - 공사 수행을 위하여 시공참여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업체는 ‘용역계약’을, 점검기관은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급계약’으로 간주되어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되고 있는 상황
-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으로 도입된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발주자의 만족도·건설업 경쟁력·시공 품질 등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영세한 건설업체간 과도한 수주 경쟁 및 불법 하도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
 - 종래 전문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던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과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발주자의 만족도·건설업 경쟁력·시공 품질 제고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

③ 해법

- ◆ **예시로 제시한 시공참여자,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등 건설공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정부·업계·연구기관이 함께 협의하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유형 2

① 현황

- ◆ 건설업체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법정 의무 미준수로 인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② 원인(예시)

- ◆ 「건설산업기본법」은 1996. 12. 30. 전부개정 된 이후 50여 차례가 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2018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등록기준, 업역, 직접시공 및 하도급 규정의 큰 변화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임

③ 해법

- ◆ 예시로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법규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계·연구기관이 함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유형 3

① 현황

- ◆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이후 아무런 시공 없이 수수료만 편취하고 하도급함으로써 불법 하도급 사례로 적발되고 있음

② 원인(예시)

-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여 ‘일괄하도급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 일괄하도급 위반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해법

- ◆ 예시로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의 경우 정부·업계가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을 통해 건설업계에서의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유형 1~2번을 우선 시행하고, 유형 3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

정책동향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4.08.30)」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연평균 약 40만 호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 예정 -

고하희 선임연구원(ghh1003@ricon.re.kr)

1.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인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 ◆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 정부는 2003년, 「주택법」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주거기본법」 제정(’15년 12월)에 따라 근거법을 달리하여 10년 단위의 주기로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10년 단위로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은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에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공표된 바 있음
- ◆ 정부는 ’24년 8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비전 하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 2013년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공표된 이후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24년 8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확정·발표되었으며, 확정된 계획에는 1개의 비전, 3대 정책 목표 등이 포함됨
 -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총 4차례(1차, 2차, 2차 수정, 3차) 발표된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매 계획마다 3대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역대 「장기 주거종합계획」 목표 및 정책 방향 요약

구분	발표일	목표	정책방향
주택종합계획 (2003~2012)	200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소 ▪ 주택시장 안정기조의 유지 ▪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시장의 상황·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② 주택 과소비 억제대책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유지 ③ 한정된 주택자원의 효율적 활용 ④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의 강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13~2022)	201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향상 ▪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 주택시장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②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③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 ④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체계 구축 ⑤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 확립

구분	발표일	목표	정책방향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13~2022) 수정계획	201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관리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23~3032)	202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 출처: 제1,2,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통한 연구자 정리

2.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4.8)」 주요 내용

◆ 1개의 비전, 3대 정책목표, 4대 분야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① 주택공급, ② 주거복지, ③ 사회변화, ④ 주거환경 등 4대 분야의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함
- 3대 정책 목표로는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을 큰 틀로 제시함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주택공급 관련 주요 내용

정책 방향	추진 전략	세부 정책과제 및 주요 내용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수급 관리		
	② 선호도 높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노후 저층주거지 등 정비 활성화 역세권 등 정비 활성화 	
		③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공급 추진 및 정주환경 확보
		④ 우수한 정주 여건의 신도시 및 신규택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기 신도시의 안정적 마무리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한 신규택지 확충
	⑤ 부동산 생산구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PF 선진화 부동산 금융 활성화 	
	⑥ 부동산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기반 산업 성장 기반 구축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산업 다양화 	

※ 출처: 보도자료를 통한 연구자 정리

주: 4대 정책방향 중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내용을 발췌 및 정리

◆ **연평균 약 40만 호에 해당하는 신규 주택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 예정**

- 4대 정책 방향 중 첫 번째인 '주택공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으로서 신규주택의 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하는 등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구체적인
- 장래 여건을 반영하여 '23~'32년 신규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 10년 간 연평균 약 39.3만 호에 해당하는 신규주택의 수요가 발생하며, 이 중 약 24.7만 호는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함

3. 정부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4.8)」 발표에 따른 시사점

◆ **일관적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위주의 충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초 유지**

-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기존에 발표되었던 '장기 주거종합계획'과 가지는 차이점으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계획(안)이 양적 확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임
- 2013년에 발표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은 언급하였으나, 양적 확대보다는 주거의 질 개선 등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두었음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에도 '13~'22년 10년간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를 현재 수준(「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신규 주택수요 추정치는 39.3만호)과 비슷한 수준인 39.0만호로 추정하였음에도 주택분양 방식의 다양화,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 머무른 계획(안)을 발표하였음
- 반면,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발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이후부터 꾸준히 도심 위주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획이라고 평가함

◆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

-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를 주거정책과 연계하여 미래 사회의 주택수요, 택지 소요 전망 등을 종합하여 향후 10년 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정책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다만, 2003년 「주택종합계획」부터 발표해온 주요 주거지표 목표에 대한 근거 설명 부재,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자료로서 타 정책 방향에 대한 계획(안)이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짐

역대 「장기 주거종합계획」 주요 주거지표 변화

구분	주택종합계획(2003)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		제3차 주거종합계획(2024)	
	발표 당시	목표(2012년)	발표 당시	목표(2022년)	발표 당시	목표(2032년)
주택보급률	107.6%	116.7%	102.7%	106.5%	102.1%	106.0%
천인당 주택수	250	320	364호	422호	430.2호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	-	93만호	190만호	180.8만호	265만호
전체가구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3%	6%	10.6%	5%	3.9%	3.0%

※ 출처: 제1,2,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통한 연구자 정리

시장동향

기준금리 인하가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점검

- 금리인하는 일정 시차를 두고 건설경기에 긍정적 영향 -

박선구 연구위원(parksungu@ricon.re.kr)

1. 금리인하 사이클 도래

- ◆ **지난 9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0%로 0.5%p 인하**
 -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금리를 낮췄다고 언급
 - 또한, 연준은 내년까지 추가 금리인하 계획을 밝혔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전망한 금리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3.4%로 향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
 - 이는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금리상승 사이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통화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
- ◆ **연준의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 경제여건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언론과 금융시장 판단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한미간 금리차, 가계부채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등을 감안하면 인하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4차례 금리인하 사이클이 있었으며, 주로 경기침체 및 그 우려에 따른 조치**
 - ① 닷컴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②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 ③ 저물가 지속과 경기침체 우려, ④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기준금리 변동 추이 (2000. 1/4~2024.2/4)



2. 금리인하와 건설경기 상관관계

◆ 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는 리스크는 존재하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실제로는 통화정책의 시차 등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하며, 개별 산업은 각기 사이클이 존재하여 통화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실제로 기준금리 변화와 건설투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금리인하 이후 바로 건설투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금리인하가 주로 예상치 못한 대규모 경기침체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금리변화와 건설투자 간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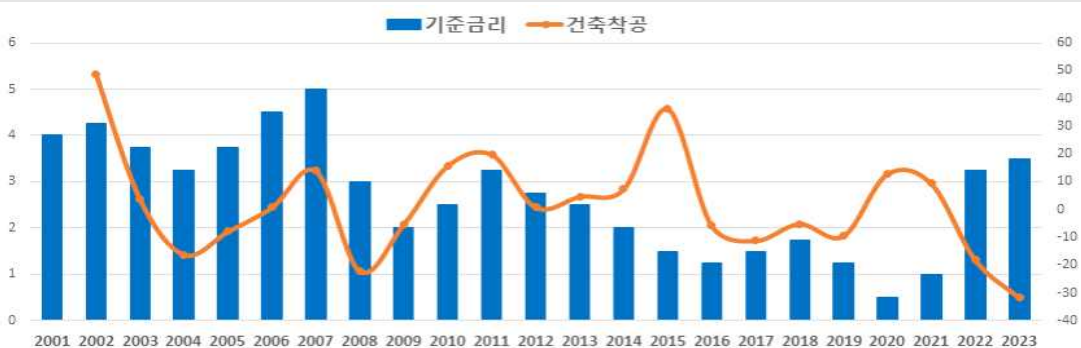
- 다만, 금리인하는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 금리인하 이후 건설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이나, 최소 1년에서 2년 이후 건설투자는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

- 이러한 모습은 건설투자보다 선행 지표적 성격의 건축착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즉 금리인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축착공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

기준금리와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200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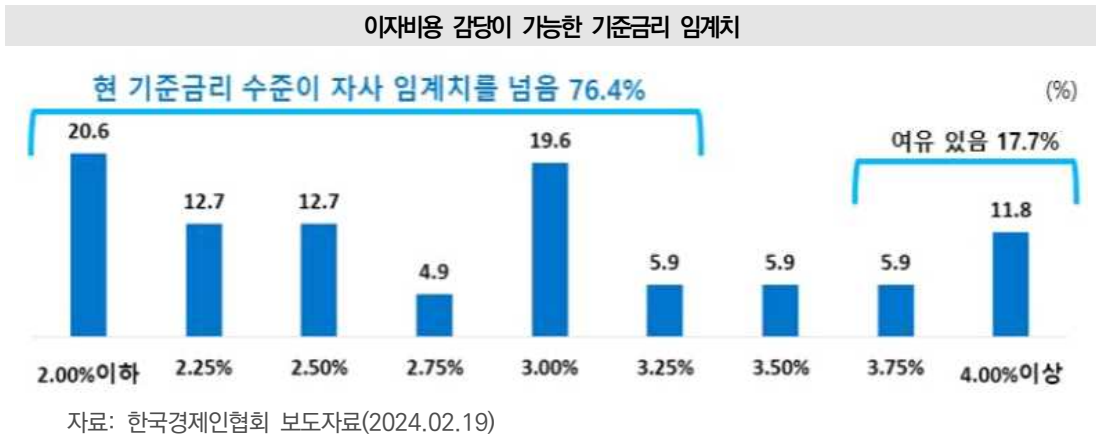
기준금리와 건축착공 증감률 추이 (2001~2023)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3. 시사점

-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설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해 전반적 경기 하강국면을 지속**
 - 올 초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매출 500대 건설기업 대상)에 따르면 76.4%의 기업이 현재 금리수준에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
 - 또한, 우리 연구원의 외감업체 대상 분석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21.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



- ◆ **다행히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은 금리인하라는 전환점이 도래**
 - 금리인상 또는 인하 사이클은 예외적인 쇼크가 없을 경우 통상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대다수
- ◆ **금리인하는 당장 건설경기 변화에 직접적 영향도는 크지 않으나, 중기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무엇보다 금리인하는 건설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비용 감소 효과가 존재
 - 건설업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건설기업 전반에 온기를 채우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하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조달비용 감소와 함께 건설기업 심리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 ◆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건설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부실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
 - 다행스럽게도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 요인이 차츰 열어지고 있는 상황
 - 금리인하가 건설기업 어려움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



RICON
건설 BRIEF VOL. 72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행처 |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행인 | 김희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www.ricon.re.kr